

고 시 안

2004년 3월 29일과 2004년 4월 1일 산티아고에서 신장범 주칠레대사와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Maria Soledad Alvear Valenzuela) 칠레 외무부장관간에 교환되어 2004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4년 월 일
외 교 통 상 부 장 관

외교통상부 고시 제486호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4개정을위한교환각서 (이하 본문별첨)

(번역문)

(칠레측 제안각서)

산티아고, 2004년 3월 29일

각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2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본인은 또한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제안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4의 개정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
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신장범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부속서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¹⁾

제1절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제1류	산 동물
01.01-01.06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1.01 내지 01.06으로의 변경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1-02.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2.01 내지 02.10으로의 변경, 단 1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03.01-03.07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3.01 내지 03.07로의 변경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04.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4.01 내지 04.10으로의 변경, 단 1901.90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5.1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5.01 내지 05.11로의 변경

제2절 - 식물성 생산품²⁾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06.0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6.01 내지 06.04로의 변경

1) 이 원산지 규정의 세번분류는 2002년 1월 1일 수정된 통일상품명칭부호체계(HS)에 따른다

2) 체약국 내 재배된 농작물 및 원예작물이 비체약국에서 수입된 종자, 인경, 뿌리, 접지, 가지 또는 기타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으로부터 재배되었을 경우에도 체약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07.1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7.01 내지 07.14로의 변경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08.1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8.01 내지 08.14로의 변경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09.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9.01 내지 09.10으로의 변경
제10류	곡물
10.01-10.08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0.01 내지 10.08로의 변경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01-11.0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1.01 내지 11.0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12.1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2.01 내지 12.14로의 변경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3.01-13.0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3.01 내지 13.02로의 변경, 단 2939.11의 양귀비 줄기 농축물은 제외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14.0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4.01 내지 14.04로의 변경

제3절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물성의 납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1-15.2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5.01 내지 15.22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제4절 -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16.01-16.05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6.01 내지 16.05로의 변경
-------------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	-----------------

17.01-17.0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7.01 내지 17.03으로의 변경
-------------	------------------------------------

17.0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7.04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18.0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8.01 내지 18.02로의 변경
-------------	-----------------------------------

18.03-18.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8.03 내지 18.05로의 변경
-------------	-----------------------------------

18.0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8.06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19.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9.01 내지 19.05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1.10-2008.9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001.10 내지 2008.91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008.92-2008.99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80%이상인 경우
2009.11-2009.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009.11 내지 2009.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009.90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80%이상인 경우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21.0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1.01 내지 21.06으로의 변경

제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22.0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2.01로의 변경

22.02-22.0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2.02 내지 22.0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23.08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3.01 내지 23.08로의 변경

23.0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3.0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4.01로의 변경

24.02-24.0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4.02 내지 24.03으로의 변경

제5절 - 광물성 생산물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25.3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5.01 내지 25.30으로의 변경
제26류	광·슬랙 및 회
26.01-26.2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6.01 내지 26.21로의 변경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27.01-27.1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7.01 내지 27.15로의 변경
27.16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7.16으로의 변경

제6절 -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무기화합물 및 귀금속·희토류 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28.4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8.01 내지 28.51로의 변경 또는 28.01 내지 28.51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842.10	2842.10의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알루미늄실리케이트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842.10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규산의 겹엽 또는 착염으로의 변경 또는 2842.10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842.10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규산의 겹엽 또는 착염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2842.10의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알루미늄실리케이트으로의 변경
2842.90	2842.10의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알루미늄실리케이트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842.90으로의 변경 또는 2842.90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8.43-28.5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8.43내지 28.51으로의 변경 또는 28.43내지 28.51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29류 유기화학품

29.01-29.3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9.01 내지 29.38으로의 변경 또는 29.01 내지 29.38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9.39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29.39의 양귀비 줄기 농축물 으로의 변경, 단 제13류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9.39의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 또는 29.39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9.40-29.4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9.40 내지 29.42로의 변경 또는 29.40내지 29.42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30류 의료용품

30.0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0.01로의 변경

30.02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0.02로의 변경 또는 30.02로의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30.03-30.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0.03내지 30.06으로의 변경

3006.10-3006.6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006.10 내지 3006.60으로의 변경

3006.7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006.70으로의 변경

3006.8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3006.80으로의 변경

제31류

비료

- 31.0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1.01로의 변경
- 31.02-31.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1.02 내지 31.05로의 변경 및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 32.01-32.0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01 내지 32.03으로의 변경 또는 32.01 내지 32.03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32.04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2.04로의 변경
- 32.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05로의 변경
- 32.06-32.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06 내지 32.07로의 변경 또는 32.06 내지 32.07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인 경우
- 32.08-32.10 32.08 내지 32.10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08 내지 32.10으로의 변경
- 32.1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11로의 변경
- 32.1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12로의 변경 또는 32.12로의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32.1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13로의 변경
- 32.1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14로의 변경 또는 32.14로의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32.1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15로의 변경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33.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3.01 내지 33.07로의 변경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11-3401.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401.11 내지 3401.20으로의 변경

3401.3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401.30으로의 변경, 단 34.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3402.11-3402.1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402.11 내지 3402.19로의 변경

3402.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402.20으로의 변경, 단 3401.30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340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402.90으로의 변경

34.03-34.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4.03 내지 34.07으로의 변경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5.01-35.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5.01 내지 35.07로의 변경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36.0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6.01 내지 36.03으로의 변경

3604.10-3606.9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604.10 내지 3606.90으로의 변경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37.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7.01 내지 37.07로의 변경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38.0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01 내지 38.08로의 변경
38.09-38.1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09 내지 38.11로의 변경 또는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38.12-38.1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12 내지 38.14로의 변경
38.15-38.1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15 내지 38.17로의 변경 또는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38.18-38.2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18 내지 38.22로의 변경
38.23-38.24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8.23 내지 38.24로의 변경
38.25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38.25로의 변경

제7절 -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39.2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9.01 내지 39.26으로의 변경 또는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40.01로의 변경
40.02-40.1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0.02 내지 40.17로의 변경

제8절 - 원피 · 가죽 · 모피 및 이들의 제품 · 마구 · 여행용구 ·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1.01-41.03	41.01 내지 41.03의 다른 상품 또는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41.01 내지 41.03의 원피로의 변경, 또는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41.01 내지 41.03의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
41.0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1.04으로의 변경, 단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41.01의 원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41.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1.05으로의 변경, 단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41.02의 원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41.0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1.06으로의 변경, 단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41.03의 원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41.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1.07으로의 변경, 단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41.01의 원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41.12-41.1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1.12 내지 41.15으로의 변경
제42류	가죽제품 · 마구 · 여행용구 ·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2.01-42.06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42.01 내지 42.06으로의 변경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1-43.0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3.01 내지 43.04로의 변경

제9절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 재료의 제품, 농 세공물 및 지조 세공물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01-44.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4.01 내지 44.07으로의 변경

44.08 44.08의 다른 상품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 단판으로의 변경, 단, 44.1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4.08의 다른 상품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44.09-44.2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4.09 내지 44.21으로의 변경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45.01-45.0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5.01 내지 45.04로의 변경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6.01-46.0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46.01 내지 46.02로의 변경

제10절 -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1-47.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7.01 내지 47.07로의 변경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1-48.1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8.01 내지 48.15로의 변경

48.1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8.16으로의 변경, 단 48.09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48.17-48.2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48.17 내지 48.23으로의 변경
제49류	인쇄서적 · 신문 · 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 · 타이프 문서 및 도면
49.01-49.1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49.01 내지 49.11로의 변경

제11절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견
50.01-50.0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0.01 내지 50.03으로의 변경
50.04-50.06	50.04 내지 50.06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0.04 내지 50.06으로의 변경
50.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0.07로의 변경
제51류	양모 · 섬수모 또는 조수모 ·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1-51.05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1.01 내지 51.05로의 변경
51.06-51.10	51.06 내지 51.10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1.06 내지 51.10으로의 변경
51.11-51.13	51.11 내지 51.13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1.11 내지 51.1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0, 52.05 내지 52.06, 54.01 내지 54.04 또는 55.09 내지 55.10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52류	면
52.01-52.07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2.01 내지 52.07로의 변경, 단 54.01 내지 54.05 또는 55.01 내지 55.07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52.08-52.12 52.08 내지 52.12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2.08 내지 52.12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0, 52.05 내지
52.06, 54.01 내지 54.04 또는 55.09 내지 55.10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53.05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3.01 내지 53.05로의 변경

53.06-53.08 53.06 내지 53.08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3.06 내지 53.08로의 변경

53.0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3.09로의 변경, 단 53.07 내지
53.08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53.10-53.11 53.10 내지 53.11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3.10 내지 53.11로의 변경, 단 53.07 내지 53.08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54류 인조필라멘트

54.01-54.07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4.01 내지 54.07로의 변경

54.08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4.08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0, 52.05 내지 52.06 또는 55.09 내지 55.10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55.1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5.01 내지 55.11로의 변경,
단 52.01 내지 52.03 또는 54.01 내지 54.05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55.12-55.16 55.12 내지 55.16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5.12 내지 55.16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0, 52.05 내지
52.06, 54.01 내지 54.04 또는 55.09 내지 55.10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56류	워딩 · 펠트 및 부직포 · 특수사 · 끈 · 코디지 ·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56.0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6.01 내지 56.09로의 변경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갈래
57.01-57.05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7.01 내지 57.05로의 변경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8.01-58.1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8.01 내지 58.11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또는 54류 내지 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59류	침투 · 도포 · 피폭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59.0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9.01로의 변경
59.0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9.02로의 변경
59.03-59.0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9.03 내지 59.09로의 변경
59.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59.10로의 변경
59.1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59.11로의 변경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60.06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0.01 내지 60.06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류,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또는 54류 내지 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류 규정 1: 다음 6단위 세번들 및 4단위 세번들에서 분류된 직물이 특정 남·여 슈트, 스트형 재킷, 스커트, 오버코드, 카코드, 아노락, 윈드치터 및 이와 유사한 의류의 눈에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되는 때에는 일방 당사국 영토내에서 새로 제작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5111 내지 5112, 5208.31내지 5208.59, 5209.31 내지 5209.59, 5210.31 내지 5210.59, 5211.31 내지 5211.59, 5212.13 내지 5212.15, 5212.23 내지 5212.25, 5407.42 내지 5407.44, 5407.52내지 5407.54, 5407.61, 5407.72 내지 5407.74, 5407.82 내지 5407.84, 5407.92 내지 5407.94, 5408.22 내지 5408.24, 5408.32내지 5408.34, 5512.19, 5512.29, 5512.99, 5513.21 내지 5513.49, 5514.21 내지 5515.99, 5516.12 내지 5516.14, 5516.22내지 5516.24, 5516.32 내지 5516.34, 5516.42 내지 5516.44, 5516.92 내지 5516.94, 6001.10, 6001.92, 6002.43 또는 6002.91 내지 6002.93

류 규정 2: 이 류의 상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당해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당해 상품의 품목분류를 판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당해 상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당해 상품이 이 류의 류 규정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에 대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소매를 제외한 의류제품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에만 적용되며, 탈착 가능한 안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101.10-6101.3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1.10 내지 6101.3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토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6101.9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1.9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토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2.10-6102.3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2.10 내지 6102.3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2.9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2.9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3.11-6103.1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3.11 내지 6103.12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3.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3.1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3.21-6103.2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3.21 내지 6103.2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가.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나.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61.01에 속하는 의류 및 61.03에 속하는 자켓과 블레이즈와 관련하여 6103.21 내지 6103.29에 속하는 앙상블에 사용될 부품으로 수입시,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이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103.31-6103.3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3.31 내지 6103.3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3.3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3.3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토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3.41-6103.4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3.41 내지 6103.4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4.11-6104.1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4.11 내지 6104.1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4.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4.1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4.21-6104.2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4.21 내지 6104.2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가.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나.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61.02에 속하는 의류 및 61.04에 속하는 자켓과 블레이즈 또는 61.04에 속하는 셔츠와 관련하여 6104.21 내지 6104.29에 속하는 앙상블에 사용될 부품으로 수입시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이 세번 변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104.31-6104.3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4.31 내지 6104.3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4.3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4.3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토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4.41-6104.4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4.41 내지 6104.4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4.51-6104.5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4.51 내지 6104.5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4.5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4.5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4.61-6104.6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4.61 내지 6104.6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5-61.06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5 내지 61.06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7.11-6107.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7.11 내지 6107.1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7.2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7.21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7.22-6107.9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7.22 내지 6107.9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8.11-6108.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8.11-6108.1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8.2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8.21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8.22-6108.2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8.22 내지 6108.2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8.3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8.31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8.32-6108.3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8.32 내지 6108.3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8.91-6108.9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8.91 내지 6108.9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09-61.1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09 내지 61.11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112.11-6112.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12.11 내지 6112.1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6112.2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12.2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가.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나.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로서 61.01, 61.02, 62.01 또는 62.02에 속하는 의류와 관련하여 6112.20에 속하는 스키 슈트에 사용될 부품으로 수입시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이 제61류 류 규정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112.31-6112.4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12.31 내지 6112.4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61.13-61.17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1.13 내지 61.17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류 규정 1: 다음 6단위 세번들 및 4단위 세번들에서 분류된 직물이 특정 남·여 슈트, 스트형 재킷, 스커트, 오버코드, 카코드, 아노락, 윈드치터 및 이와 유사한 의류의 눈에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되는 때에는 일방 당사국 영토내에서 사로 제작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5111 내지 5112, 5208.31내지 5208.59, 5209.31 내지 5209.59, 5210.31 내지 5210.59, 5211.31 내지 5211.59, 5212.13 내지 5212.15, 5212.23 내지 5212.25, 5407.42 내지 5407.44, 5407.52내지 5407.54, 5407.61, 5407.72 내지 5407.74, 5407.82 내지 5407.84, 5407.92 내지 5407.94, 5408.22 내지 5408.24, 5408.32내지 5408.34, 5512.19, 5512.29, 5512.99, 5513.21 내지

5513.49, 5514.21 내지 5515.99, 5516.12 내지 5516.14, 5516.22 내지 5516.24, 5516.32 내지 5516.34, 5516.42 내지 5516.44, 5516.92 내지 5516.94, 6001.10, 6001.92, 6002.43 또는 6002.91 내지 6002.93

류 규정 2: 이 류의 상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당해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당해 상품의 품목분류를 판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당해 상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당해 상품이 이 류의 류 규정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에 대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소매를 제외한 의류제품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눈에 보이는 안감 직물에만 적용되며, 탈착 가능한 안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201.11-6201.1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1.11 내지 6201.1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6201.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1.1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6201.91-6201.9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1.91 내지 6201.9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6201.9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1.9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2.11-6202.1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2.11 내지 6202.1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2.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2.1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2.91-6202.9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2.91 내지 6202.9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2.9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2.9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3.11-6203.1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3.11 내지 6203.12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3.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3.1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3.21-6203.2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3.21 내지 6203.2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3.31-6203.3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3.31 내지 6203.3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3.3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3.3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3.41-6203.4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3.41 내지 6203.4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4.11-6204.1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4.11 내지 6204.1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4.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4.1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4.21-6204.2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4.21 내지 6204.2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4.31-6204.3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4.31 내지 6204.3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4.3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4.3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4.41-6204.4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4.41 내지 6204.4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4.51-6204.5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4.51 내지 6204.5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4.5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4.5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4.61-6204.6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4.61 내지 6204.6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계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5.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5.1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계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05.20-6205.30 (주)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는 한 또는 양 계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조립이 이루어지고, 칼라 또는 커프스를 제외한 곁판이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원산지가 인정된다.
- 가. 실의 평균 미터식 변수가 135수를 초과하는 5208.21, 5208.22, 5208.29, 5208.31, 5208.32, 5208.39, 5208.41, 5208.42, 5208.49, 5208.51, 5208.52 또는 5208.59에 속하는 직물
 - 나. 스퀘어 컨스트럭션(1 평방미터당 경·위사 밀도의 합이 79이상인 경우 경·위사 각각의 밀도가 그합의 57%미만 이고, 1평방미터당 경·위사 밀도의 합이 79이하인 경우 경·위사 밀도차가 11이하)에 해당하지 않고, 평방 센티미터당 70수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고, 실의 평균 미터식 변수가 70수를 초과하는 5513.11 또는 5513.21에 속하는 직물
 - 다. 스퀘어 컨스트럭션에 해당하지 않고, 평방 센티미터당 70수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고, 실의 평균 미터식 변수가 70수를 초과하는 5210.21 또는 5210.31에 속하는 직물
 - 라. 스퀘어 컨스트럭션에 해당하지 않고, 평방 센티미터당 75수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고 실의 평균 미터식 변수가 65수를 초과하는 5208.22 또는 5208.32에 속하는 직물

- 마. 평방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미만이고 도비 무늬를 가지고 있는 5407.81, 5407.82 또는 5407.83에 속하는 직물
- 바. 스퀘어 컨스트럭션에 해당하지 않고, 평방 센티미터당 85수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고 실의 평균 미터식 변수가 85수를 초과하는 5208.42 또는 5208.49에 속하는 직물
- 사. 스퀘어 컨스트럭션에 해당하지 않고, 평방 센티미터당 75수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고 실의 평균 미터식 변수가 95수를 초과하는 5208.51에 속하는 직물
- 아. 스퀘어 컨스트럭션에 해당하고 선염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방 센티미터당 단사로 만든 85수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고, 평균 미터식 변수가 95수 이상이며 경사와 위사에 사용된 색사가 체크형태로 특징지워지는 5208.41에 속하는 직물
- 자. 천연염색을 한 경사와 표백 또는 천연염색한 위사를 가진 평균 미터식 변수가 65수 이상인 5208.41에 속하는 직물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5.20 내지 6205.3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6205.9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5.9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62.06-62.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06 내지 62.1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11.11-6211.1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11.11 내지 6211.12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11.2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11.2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11.31-6211.4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11.31 내지 6211.49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12.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12.10으로의 변경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12.20-6212.9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12.20 내지 6212.9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62.13-62.17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2.13 내지 62.17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또는 55.08 내지 55.16,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넘마**

63.01-63.0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3.01 내지 63.02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내지 55류 또는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63.0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3.03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내지 55류 또는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편직)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63.04-63.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3.04 내지 63.10으로의 변경, 단 51.06 내지 51.13, 52.04 내지 52.12, 53.07 내지 53.08 또는 53.10 내지 53.11, 54류 내지 55류 또는 58.01 내지 58.02 또는 60.01 내지 60.0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한 또는 양 체약국 영역내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12절 - 신발류 · 모자류 · 산류 · 지팡이 · 시트스틱 ·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64류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1-64.05 64.01 내지 64.05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64.01 내지 64.05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6406.1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6406.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6406.20-6406.9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406.20 내지 6406.99로의 변경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65.0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5.01 내지 65.02로의 변경
65.03-65.07	65.03 내지 65.07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65.03 내지 65.07로의 변경

제66류	산류 · 지팡이 · 시트스틱 ·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66.0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66.01 내지 66.03으로의 변경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7.01로의 변경
67.0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67.02로의 변경
67.0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7.03으로의 변경
67.0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67.04로의 변경

제13절 - 석 · 플라스터 · 시멘트 · 석면 ·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석 · 플라스터 · 시멘트 · 석면 ·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68.1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8.01 내지 68.11로의 변경
6812.5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6812.50으로의 변경
6812.60-6812.9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6812.90의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으로의 변경

제14절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
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1.01-71.1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71.01 내지 71.12로의 변경

71.13-71.18 71.13 내지 71.18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1.13 내지 71.18로의 변경

제15절 - 비금속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72.0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72.01로의 변경

72.02-72.0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02 내지 72.04로의 변경

7205.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05.10으로의 변경

7205.21-7205.2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05.21 내지 7205.29로의 변경

72.06-72.07 72.06 내지 72.07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06 내지 72.07로의 변경

72.08-72.0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08 내지 72.09로의 변경

7210.11-7210.6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10.11 내지 7210.69로의 변경

7210.70-7210.90 72.08 내지 72.16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10.70 내지 7210.90으로의 변경

7211.13-7211.1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11.13 내지 7211.19로의 변경

7211.23-7211.90	72.08 내지 72.16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11.23 내지 7211.90으로의 변경
7212.10-7212.30 7212.40-7212.6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12.10 내지 7212.30으로의 변경 72.08 내지 72.16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12.40 내지 7212.60으로의 변경
72.13-72.14	72.08 내지 72.16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13 내지 72.14로의 변경
72.15-72.1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15 내지 72.16으로의 변경
72.17-72.1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17 내지 72.18로의 변경
7219.11-7219.90	72.19 내지 72.20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19.11 내지 7219.90으로의 변경
7220.11-7220.90	72.19 내지 72.20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20.11 내지 7220.90으로의 변경
72.21-72.23	72.21 내지 72.23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21 내지 72.23으로의 변경
72.24	72.24 내지 72.29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24로의 변경
7225.11-7225.4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25.11 내지 7225.40으로의 변경
7225.50-7225.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25.50 내지 7225.99로의 변경, 단 72.24 내지 72.29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7226.11-7226.9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26.11 내지 7226.91로의 변경
7226.92-7226.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26.92 내지 7226.99로의 변경, 단 72.24 내지 72.29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72.2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2.27로의 변경

- 73.24(b)⁴⁾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3.24(b)로의 변경 또는 73.24(a)로부터 73.24(b)로의 변경
- 73.25-73.26 73.25 내지 73.26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3.25 내지 73.26으로의 변경

제74류 동과 그 제품

- 74.01-74.06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74.01 내지 74.06으로의 변경
- 74.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4.07로의 변경
- 74.0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4.08로의 변경, 단 74.07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 74.0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4.09로의 변경
- 74.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4.10으로의 변경, 단 74.09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 74.1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4.11로의 변경
- 74.1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4.12로의 변경, 단 74.11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 74.1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4.13으로의 변경, 단 74.07 내지 74.08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 74.14-74.1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4.14 내지 74.17로의 변경
- 74.18-74.1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4.18 내지 74.19로의 변경 및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4) 도금 또는 도포한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75.0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75.01 내지 75.04로의 변경

75.05-75.0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5.05 내지 75.08로의 변경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76.0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76.01 내지 76.03으로의 변경

76.04-76.06 76.04 내지 76.06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6.04 내지 76.06으로의 변경

76.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6.07로의 변경

76.08-76.09 76.08 내지 76.09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6.08 내지 76.09로의 변경

76.10-76.1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6.10 내지 76.13으로의 변경

76.1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6.14로의 변경, 단 76.04 내지
76.05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76.15-76.1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6.15 내지 76.16으로의 변경

제78류 연과 그 제품

7801.10-7801.91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7801.10 내지 7801.91로의 변경

7801.9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7801.99로의 변경

78.0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78.02로의 변경

78.03-78.0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8.03 내지 78.06으로의 변경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7901.11-7901.2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7901.11 내지 7901.20으로의 변경

79.02-79.0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79.02 내지 79.03으로의 변경

79.04-79.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79.04 내지 79.07로의 변경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80.0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0.01 내지 80.02로의 변경

80.03-80.0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0.03 내지 80.04로의 변경

80.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0.05로의 변경, 단 80.04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80.06-80.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0.06 내지 80.07로의 변경

제81류 기타 비금속, 서멧, 이들의 제품

8101.10-8101.9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1.10 내지 8101.94로의 변경

8101.95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1.95로의 변경

8101.96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1.96으로의 변경, 단 8101.95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8101.97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1.97으로의 변경

8101.99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1.99으로의 변경

8102.10-8102.9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2.10 내지 8102.94로의 변경

8102.95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2.95로의 변경

8102.96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2.96으로의 변경, 단 8102.95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8102.97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2.97으로의 변경

8102.99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2.99로의 변경
8103.2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3.20으로의 변경
8103.3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3.30으로의 변경
8103.9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3.90으로의 변경
8104.11-8104.2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4.11 내지 8104.20으로의 변경
8104.30-8104.9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4.30 내지 8104.90으로의 변경
8105.2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5.20으로의 변경
8105.3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5.30으로의 변경
8105.9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5.90으로의 변경
8106.0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6.00으로의 변경 또는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107.2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7.20으로의 변경
8107.3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7.30으로의 변경
8107.9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7.90으로의 변경
8108.2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8.20으로의 변경
8108.3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8.30으로의 변경
8108.9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8.90으로의 변경
8109.2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9.20으로의 변경
8109.3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09.30으로의 변경
8109.9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09.90으로의 변경

8110.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0.10으로의 변경 또는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110.2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0.20으로의 변경
8110.9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0.90으로의 변경 또는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111.0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1.00으로의 변경 또는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112.12-8112.1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2.12 내지 8112.13으로의 변경
8112.19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12.19로의 변경
8112.2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2.21으로의 변경 또는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112.2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2.22로의 변경
8112.29-8112.4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2.29 내지 8112.40으로의 변경 또는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112.51-8112.5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2.51 내지 8112.52로의 변경
8112.59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12.59로의 변경, 단 8112.99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8112.9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2.92로의 변경
8112.99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112.99로의 변경, 단 8112.59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8113.0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113.00으로의 변경 또는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2.01-82.15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2.01 내지 82.15로의 변경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3.01로의 변경 또는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3.02-83.0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3.02 내지 83.04로의 변경
83.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3.05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3.06-83.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3.06 내지 83.07로의 변경
83.0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3.08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3.09-83.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3.09 내지 83.10으로의 변경
83.1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83.11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16절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4류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1.10-8401.3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01.10 내지 8401.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01.4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1.40으로의 변경
8402.11-8402.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2.11 내지 8402.2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02.11 내지 8402.2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0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2.90으로의 변경
8403.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3.1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03.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0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3.90으로의 변경
8404.10-8404.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4.10 내지 8404.2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04.10 내지 8404.2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0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4.90으로의 변경
8405.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5.1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05.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0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5.90으로의 변경
8406.10-8406.8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6.10 내지 8406.82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06.10 내지 8406.82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06.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6.90으로의 변경
84.07-84.0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7 내지 84.08로의 변경 및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84.0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09로의 변경
8410.11-8410.1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0.11 내지 8410.13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0.11 내지 8410.13으로의 변경 및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10.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0.90으로의 변경
8411.11-8411.8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1.11 내지 8411.82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1.11 내지 8411.82로의 변경 및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11.91-8411.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1.91 내지 8411.99로의 변경
8412.10-8412.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2.10 내지 8412.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2.10 내지 8412.80으로의 변경 및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1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2.90으로의 변경
8413.11-8413.8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3.11 내지 8413.82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3.11 내지 8413.82로의 변경 및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13.91-8413.9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3.91 내지 8413.92로의 변경
84.14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4로의 변경 및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15.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10의 자장식의 창문형 또는 벽형의 공기조절기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10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10의 “분리형의 것”으로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10으로의 변경, 단 8415.82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15.20-8415.8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20내지 8415.81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20 내지 8415.81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15.8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82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82로의 변경, 단 8415.10의 “분리형의 것”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15.8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83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83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1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5.90으로의 변경
- 8416.10-8416.3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6.10 내지 8416.3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6.10 내지 8416.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16.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6.90으로의 변경
- 8417.10-8417.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7.10 내지 8417.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7.10 내지 8417.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17.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7.90으로의 변경
8418.10-8418.50	8418.10 내지 8418.50에 속하지 않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8.10 내지 8418.50으로의 변경, 단 8418.91 또는 8418.99로부터의 변경 또는 조립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연결튜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조립의 경우
8418.61-8418.69	8418.61 내지 8418.69에 속하지 않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8.61 내지 8418.6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18.91-8418.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8.91 내지 8418.99로의 변경
8419.11-8419.8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9.11 내지 8419.8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19.11 내지 8419.8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19.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19.90으로의 변경
8420.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0.1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20.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20.91-8420.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0.91 내지 8420.99로의 변경
8421.11-8421.3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1.11 내지 8421.3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21.11 내지 8421.3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21.91-8421.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1.91 내지 8421.99로의 변경
8422.11-8422.4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2.11 내지 8422.4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22.11 내지 8422.4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2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2.90으로의 변경
8423.10-8423.8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3.10 내지 8423.8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2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3.90으로의 변경
8424.10-8424.8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4.10 내지 8424.8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24.10 내지 8424.8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2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4.90으로의 변경
84.25-84.3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25 내지 84.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3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1로의 변경
8432.10-8432.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2.10 내지 8432.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32.10 내지 8432.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3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2.90으로의 변경
8433.11-8433.6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3.11 내지 8433.6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33.11 내지 8433.6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3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3.90으로의 변경
8434.10-8434.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4.10 내지 8434.2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3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4.90으로의 변경
8435.1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35.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3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5.90으로의 변경
8436.10-8436.8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36.10 내지 8436.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36.91-8436.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6.91 내지 8436.99로의 변경
8437.10-8437.8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37.10 내지 8437.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37.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7.90으로의 변경
8438.10-8438.8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38.10 내지 8438.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38.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8.90으로의 변경
8439.10-8439.3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39.10 내지 8439.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39.91-8439.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39.91 내지 8439.99로의 변경
8440.1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40.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40.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40.90으로의 변경

8441.10-8441.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41.10 내지 8441.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4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41.90으로의 변경
8442.10-8442.3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42.10 내지 8442.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42.40-8442.5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42.40 내지 8442.50으로의 변경
8443.11-8443.6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43.11 내지 8443.6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4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43.90으로의 변경
84.44-84.4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44 내지 84.47로의 변경, 단 84.48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84.48로부터 84.44 내지 84.47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4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48로의 변경
84.4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49로의 변경, 단 84.49(a)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84.49(a)로부터 84.4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84.49(a) ⁵⁾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49(a)로의 변경
8450.11-8450.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0.11 내지 8450.2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50.11 내지 8450.2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50.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0.90으로의 변경

5) 84.49에 속하는 부분품

- 8451.10-8451.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1.10 내지 8451.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51.10 내지 8451.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5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1.90으로의 변경
- 8452.10-8452.4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2.10 내지 8452.4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52.10 내지 8452.4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5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2.90으로의 변경
- 8453.10-8453.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3.10 내지 8453.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53.10 내지 8453.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5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3.90으로의 변경
- 8454.10-8454.3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4.10 내지 8454.3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54.10 내지 8454.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5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4.90으로의 변경
- 8455.10-8455.3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5.10 내지 8455.3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55.10 내지 8455.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845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5.90으로의 변경
- 84.56-84.6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56 내지 84.65로의 변경, 단 84.66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84.66으로부터 84.56 내지 84.65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6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66으로의 변경
8467.11-8467.8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67.11 내지 8467.8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67.11 내지 8467.8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67.91-8467.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67.91 내지 8467.99로의 변경
8468.10-8468.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68.10 내지 8468.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68.10 내지 8468.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68.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68.90으로의 변경
84.69-84.7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69 내지 84.72로의 변경, 단 84.13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84.13으로부터 84.69 내지 84.72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7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3으로의 변경
8474.10-8474.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4.10 내지 8474.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74.10 내지 8474.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7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4.90으로의 변경
8475.10-8475.2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5.10 내지 8475.2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75.10 내지 8475.2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7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5.90으로의 변경

8476.21-8476.8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6.21 내지 8476.8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76.21 내지 8476.8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76.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6.90으로의 변경
8477.10-8477.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7.10 내지 8477.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77.10 내지 8477.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77.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7.90으로의 변경
8478.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8.1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78.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78.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8.90으로의 변경
8479.10-8479.8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9.10 내지 8479.8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79.10 내지 8479.8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79.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79.90으로의 변경
84.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80으로의 변경
8481.10-8481.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81.10 내지 8481.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81.10 내지 8481.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8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81.90으로의 변경

8482.10-8482.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82.10 내지 8482.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82.10 내지 8482.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82.91-8482.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82.91 내지 8482.99로의 변경
8483.10-8483.6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83.10 내지 8483.6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483.10 내지 8483.6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48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83.90으로의 변경
84.84-84.8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4.84 내지 84.85로의 변경
제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85.0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01 내지 85.02로의 변경, 단 85.03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85.03으로부터 85.01 내지 85.02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0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03으로의 변경
8504.10-8504.5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04.10 내지 8504.5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04.10 내지 8504.5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0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04.90으로의 변경
8505.11-8505.3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05.11 내지 8505.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0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05.90으로의 변경
8506.10-8506.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06.10 내지 8506.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06.10 내지 8506.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06.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06.90으로의 변경
85.07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07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09.10-8509.8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09.10 내지 8509.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09.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09.90으로의 변경
8510.10-8510.3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10.10 내지 8510.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10.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0.90으로의 변경
8511.10-8511.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1.10 내지 8511.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1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1.90으로의 변경
8512.10-8512.4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12.10 내지 8512.4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1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2.90으로의 변경
8513.1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13.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1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3.90으로의 변경
8514.10-8514.4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14.10 내지 8514.4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1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4.90으로의 변경
8515.11-8515.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5.11 내지 8515.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15.11 내지 8515.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1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5.90으로의 변경
8516.10-8516.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6.10 내지 8516.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16.10 내지 8516.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16.90(a) ⁶⁾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6.90(a)로의 변경 또는 8516.90(b)로부터 8516.90(a)로의 변경
8516.90(b) ⁷⁾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6.90(b)로의 변경
8517.11-8517.8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17.11 내지 8517.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17.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7.90으로의 변경
8518.10-8518.5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8.10 내지 8518.5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18.10 내지 8518.5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6) 8516.90(a) : 8516.50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공동 공진기(캐비티)

7) 8516.90(b) : 85.16에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

8518.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8.90으로의 변경
85.19-85.2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19 내지 85.21로의 변경, 단 85.22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85.22로부터 85.19 내지 85.21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22-85.2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22 내지 85.24로의 변경
85.25-85.2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25 내지 85.26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2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27로의 변경, 단 85.29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85.29로부터 85.27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28.12-8528.3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28.12 내지 8528.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2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29로의 변경
8530.10-8530.8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30.10 내지 8530.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30.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0.90으로의 변경
8531.10-8531.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1.10 내지 8531.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31.10 내지 8531.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3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1.90으로의 변경

8532.10-8532.3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2.10 내지 8532.3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32.10 내지 8532.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3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2.90으로의 변경
8533.10-8533.4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3.10 내지 8533.4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33.10 내지 8533.4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3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3.90으로의 변경
85.3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4로의 변경
85.35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35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3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6으로의 변경
85.3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7로의 변경, 단 85.38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85.38로부터 85.37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3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8로의 변경
8539.10-8539.4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9.10 내지 8539.4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39.10 내지 8539.4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39.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39.90으로의 변경
8540.11-8540.8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40.11 내지 8540.8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40.11 내지 8540.8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40.91-8540.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40.91 내지 8540.99로의 변경
8541.10-8541.6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41.10 내지 8541.6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4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41.90으로의 변경
8542.10-8542.7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42.10 내지 8542.7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4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42.90으로의 변경
8543.11-8543.8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43.11 내지 8543.8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8543.11 내지 8543.8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854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43.90으로의 변경
85.44-85.4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5.44 내지 85.48로의 변경

제17절 - 차량·항공기·선박과 그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86.0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6.01 내지 86.06으로의 변경
86.07-86.0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6.07 내지 86.08로의 변경
86.0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86.09로의 변경

9001.20-900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1.20 내지 9001.90으로의 변경
90.0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2로의 변경, 단 90.01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9003.11-9003.1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3.11 내지 9003.1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03.11 내지 9003.1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0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3.90으로의 변경
90.0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0.04로의 변경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4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05.10-9005.8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05.10 내지 9005.80으로의 변경
900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5.90으로의 변경
9006.10-9006.6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6.10 내지 9006.6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06.10 내지 9006.6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06.91-9006.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6.91 내지 9006.99로의 변경
9007.11-9007.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7.11 내지 9007.2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07.11 내지 9007.2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07.91-9007.9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7.91 내지 9007.92로의 변경
9008.10-9008.4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8.10 내지 9008.4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08.10 내지 9008.4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08.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8.90으로의 변경
9009.11-9009.3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09.11 내지 9009.30으로의 변경
9009.91-9009.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09.91 내지 9009.99로의 변경
9010.10-9010.6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0.10 내지 9010.6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10.10 내지 9010.6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10.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0.90으로의 변경
9011.10-9011.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1.10 내지 9011.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11.10 내지 9011.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1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1.90으로의 변경
9012.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2.1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12.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1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2.90으로의 변경
9013.10-9013.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3.10 내지 9013.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13.10 내지 9013.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1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3.90으로의 변경
9014.10-9014.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4.10 내지 9014.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14.10 내지 9014.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1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4.90으로의 변경
9015.10-9015.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5.10 내지 9015.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15.10 내지 9015.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1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5.90으로의 변경
90.1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6으로의 변경 또는 90.16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17.10-9017.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7.10 내지 9017.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17.10 내지 9017.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17.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7.90으로의 변경
9018.11-9018.3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8.11 내지 9018.32로의 변경
9018.39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18.39로의 변경 또는 9018.39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18.41-9018.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8.41 내지 9018.90으로의 변경
90.19-90.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19 내지 90.20으로의 변경
9021.10-9021.9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21.10 내지 9021.90으로의 변경
9022.12-9022.14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22.12 내지 9022.14로의 변경
9022.19-9022.21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22.19 내지 9022.21로의 변경

9022.29-9022.3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2.29 내지 9022.3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22.29 내지 9022.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22.9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22.90으로의 변경
90.2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3으로의 변경
9024.10-9024.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4.10 내지 9024.80으로의 변경 또는 9024.10 내지 9024.80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902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4.90으로의 변경
9025.11-9025.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5.11 내지 9025.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25.11 내지 9025.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2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5.90으로의 변경
9026.10-9026.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6.10 내지 9026.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26.10 내지 9026.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26.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6.90으로의 변경
9027.10-9027.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7.10 내지 9027.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27.10 내지 9027.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27.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7.90으로의 변경

9028.10-9028.3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8.10 내지 9028.3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28.10 내지 9028.3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28.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8.90으로의 변경
9029.10-9029.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9.10 내지 9029.2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29.10 내지 9029.2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29.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29.90으로의 변경
9030.10-9030.8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30.10 내지 9030.8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30.10 내지 9030.8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30.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30.90으로의 변경
9031.10-9031.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31.10 내지 9031.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31.10 내지 9031.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3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31.90으로의 변경
9032.10-9032.8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32.10 내지 9032.8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032.10 내지 9032.8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03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32.90으로의 변경
90.3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0.33으로의 변경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91.01-91.07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1.01 내지 91.07로의 변경
- 91.08-91.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1.08 내지 91.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9111.10-9111.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111.10 내지 9111.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111.10 내지 9111.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911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111.90으로의 변경
- 9112.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112.2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112.2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911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112.90으로의 변경
- 91.1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1.13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91.1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1.14로의 변경

제92류

약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92.01-92.08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2.01 내지 92.08로의 변경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2.01 내지 92.08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92.0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2.09로의 변경

제19절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93.0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3.01 내지 93.04로의 변경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3.01 내지 93.04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93.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3.05로의 변경
93.06-93.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3.06 내지 93.07로의 변경

제20절 - 잡품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1.10-9401.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401.10 내지 9401.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401.10 내지 9401.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401.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401.90으로의 변경
94.0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4.02로의 변경
9403.10-9403.8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403.10 내지 9403.8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403.10 내지 9403.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40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403.90으로의 변경

9404.10-9404.3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404.10 내지 9404.30으로의 변경
940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404.90으로의 변경
9405.10-9405.6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405.10 내지 9405.6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405.10 내지 9405.6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405.91-9405.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405.91 내지 9405.99로의 변경
94.0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4.06으로의 변경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5.01로의 변경
9502.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502.1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502.1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502.91-9502.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502.91 내지 9502.99로의 변경
95.0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5.03으로의 변경
9504.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504.10으로의 변경
9504.20-9504.4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504.20 내지 9504.40으로의 변경
9504.9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504.90으로의 변경
95.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5.05로의 변경
9506.11-9506.2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506.11 내지 9506.29로의 변경
9506.3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506.31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506.31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506.32-9506.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506.32 내지 9506.99로의 변경
95.07-95.0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5.07 내지 95.08로의 변경
제96류	잡품
96.01-96.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6.01 내지 96.05로의 변경
9606.1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606.10으로의 변경
9606.21-9606.2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606.21 내지 9606.2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606.21 내지 9606.2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606.3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606.30으로의 변경
9607.11-9607.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607.11 내지 9607.1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607.11 내지 9607.1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607.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607.20으로의 변경
9608.10-9608.5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608.10 내지 9608.50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608.10 내지 9608.5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9608.60-9608.9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608.60 내지 9608.99로의 변경
96.09-96.1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6.09 내지 96.12로의 변경
9613.10-9613.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613.10 내지 9613.90으로의 변경
9614.2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614.20으로의 변경, 단 9614.90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 9614.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614.90으로의 변경
- 9615.11-9615.1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9615.11 내지 9615.19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9615.11 내지 9615.1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 9615.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615.90으로의 변경
- 96.16-96.1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6.16 내지 96.18로의 변경

제21절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97.01-97.0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97.01 내지 97.06으로의 변경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산티아고, 2004년 4월 1일

각하,

본인은 2004년 3월 29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과, 부속서가 첨부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4의 개정

신장범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
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각하